

신학대학 학사시행세칙

제정 2003. 09. 01.

개정 2024. 02. 27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학대학(이하 ‘본 교정’)의 학사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재입학, 전과, 편입

- 제2조(재입학) ① 학칙 제 19조에 의거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제적사유와 재학시의 학업성적 및 품행을 심사하여 2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1>
-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적 사유가 학칙 제70조(징계)에 의한 경우에는 재입학 기회를 1회로 한정한다. <개정 2018.3.1>
- ③ 재입학 허가 시기는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한하며, 재입학 원서와 서약서, 성적증명서 및 기타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- ④ 재입학은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만 한하며, 자퇴일 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재입학 할 수 있다.
- ⑤ <삭제 2018.3.1>
- ⑥ 재입학이 허가된 후에도 재입학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3조(전과) 본 교정에서는 교정별, 학과별 전과를 시행하지 않는다.

- 제4조(편입학) ① 편입학은 본교의 사제 양성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국내외 가톨릭계 대학 출신자에 한하여 허가한다. <개정 2015.12.24>
- ② 편입학 학년은 전적 대학에서의 이수학년, 이수과목, 학점수 등을 고려하여 교학처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5.12.24>

제3장 교과 이수 <개정 2022.03.01.>

- 제5조(이수학점) <삭제 2022.03.01.>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. <신설 2022.03.01.>
- ② 과정별 학점이수는 다음과 같다. <신설 2022.03.01.>

과정	전공 기초	교양 필수	전공 필수	전공 선택	교양 선택	자유 선택	졸업 학점
STB	26	19	125	2	4		180
전공심화(BA)	26	9		72 ~		0 ~	130 ~
복수전공	26	9		45 ~		0 ~	130 ~
신학제2전공				36 ~		0 ~	130 ~

- ③ 신학제1전공자는 1학년을 종료하는 시점에 STB와 전공심화(BA) 중 택1하여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성직지망자는 STB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03.01.>
- ④ 복수전공 신청은 1학년 말부터 4학년 1학기 종료 직전까지 매학기 신청할 수 있다. 단, 수도권 학생의 복수전공 신청은 소속 수도권 장상의 승인을 얻은 후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03.01.>
- ⑤ 교육과정 변경은 4학년 1학기 종료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. 단, STB 전공자가 4학년 1학기 이후에 STB 과정을 포기하는 경우, 교육과정 변경(포기)신청서를 제출한 후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신학사 학위(BA)를 취득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3.01.>
- ⑥ 복수전공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, 제2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3.01.>

제5조의2(공동학위과정) 필리핀 산토 토마스대학교 신학대학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,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성신교정 공동학위과정 운영규정」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11.13.>

제6조(학년 수료학점)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08.3.1., 2020.11.13.>

- 제1학년 : 졸업소요학점의 1/4 이상 <개정 2022.03.01.>
- 제2학년 : 졸업소요학점의 2/4 이상 <개정 2022.03.01.>
- 제3학년 : 졸업소요학점의 3/4 이상 <개정 2022.03.01.>
- 제4학년 : 졸업소요학점의 4/4 이상 <개정 2022.03.01.>

제7조(학점인정) ① 신입생이 본교 입학 전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 교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필수과목에 한해 최대 8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3.1., 2015.12.24., 2022.8.11.>

- ②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은 본교 졸업학점의 1/2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5.12.24>
- ③ 학점인정신청은 학업을 시작한 학기의 개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.
- ④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.
- ⑤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본교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12.24>

제7조의2(교과목 이수 면제) ①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을 취득한 경우 필수선택(외국
어) 4학점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4>

② 교학처장은 학생의 학력 및 이력 등 객관적인 기준이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의 교과내용을 충족
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4>

제8조(수강신청) 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선정한 후 신청
한다.

② 수강신청변경은 매학기 개강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2.03.01.>

③ 신학제1전공자는 1학년 교과목을 교과과정표에 지정된 학년 및 학기에 수강하는 것이
원칙이다. <개정 2022.03.01.>

④ <삭제 2022.03.01.>

⑤ 모든 학생은 매학기 최대 신청학점으로 2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재수강과목 및
교직과목의 학점은 최대 신청 학점수에 가산하지 않는다. <개정 2022.03.01.>

⑥ 수강신청기간 만료 후, 수강신청확정서를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강신청과목의 변경) ① 수강신청기간 만료 후 강의시간 변경, 수강생 조정 및 폐강 등 불가피한
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을 허가한다.

② 수강과목의 변경은 수강신청기간 만료 후 일주일 이내에만 허가한다.

제10조(수강과목의 취소) ①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과목담당교
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과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허락을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수강과목의 취소는 매학기 수업시작일로부터 4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.

제11조(재수강) ① 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에 대해서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등록하여야 한
다. <개정 2024.02.27.>

② 재수강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.

제12조(재이수) ① 이미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재이수는 C+이하의 교과목으로 한다. <개정
2014.10.11., 2024.02.27.>

② 교과목의 성적은 재이수한 성적을 최종성적으로 한다.

③ 동일 교과목의 재이수는 1회에 한한다.

④ 재이수 신청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02.27.>

제13조 <삭제 2014.10.11>

제14조(세미나) ① <삭제 2022.03.01.>

② <삭제 2010.9.1>

- ③ <삭제 2010.9.1>
- ④ 각 세미나의 참가학생은 최대 12명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15조(교직과정) ①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개시 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고 2학년 과정에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학업성적 70% + 학업계획서 10% + 면접 30%를 반영한 성적순으로 2학년 종료 시까지 선발한다. <개정 2011.3.1, 2012.3.1, 2015.12.24>
-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정 승인인원 범위 이내에서 선발하며, 선발된 인원은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.
- ④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,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3.3.1>
- ⑤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 2학점(4주)과 교육봉사활동 2학점(60시간 이상)으로 하며, 그 외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관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1>
- ⑥ 교직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「교직과정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- ⑦ 교원자격증의 자격증별 및 표시과목은 다음과 같다.
【자격증별: 「중등학교 2급정교사」, 표시과목: 「종교」】
- ⑧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제16조(청강) <삭제 2020.3.1>

제4장 시험, 성적평가, 학사경고, 유급, 졸업

제17조(시험)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정기시험으로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하되, 중간시험은 교과목에 따라 연구보고서나 구두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, 과목에 따라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.

- 제18조(재시험) ① 학기말 성적이 낙제인 경우 1회의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- ② 재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은 C급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 재시험은 방학 후 2주 이내에 실시한다. <개정 2022.03.01.>

- 제19조(추가시험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가 소정양식의 추가시험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경우, 교학처장은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 응시를 허락할 수 있다.
- ② 추가시험 성적은 B급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.

제20조(성적평가) ① 교과목별 성적 평가 등급은 A+, A, B+, B, C+, C, D+, D, F로 한다(〔별표 I〕 참조).

- ②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21조(학사경고) ① 매학기 평점평균이 2.0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.<개정2020.3.1.>

- ② 당해 학기 졸업 또는 수료 예정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20.3.1.>
- ③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.<신설 2020.3.1.>

제22조(유급) <삭제 2020.3.1.>

제23조(부정행위) ①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칙 제70조에 따라 징계한다.

- (가) 시험중 부정직한 행위
- (나) 수업시간에 대리출석 또는 대리 점호에 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행위
- (다)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행위
- ②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해당학기 전과목을 득점할 수 없으며, 1개월 이상 무기정학에 처한다.

제24조(졸업) ① <삭제 2022.03.01.>

- ② <삭제 2022.03.01.>
- ③ 신학제1전공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신학제2전공자는 졸업논문 또는 종합 시험 중 택1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3.01.>
- ④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22.03.01.>
- ⑤ 졸업생으로서 학칙 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. <개정 2020.11.13., 2022.03.01.>
- ⑥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3.01.>

제5장 결석, 휴학, 복학, 제적

제25조(결석) ① 결석이란 해당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 단, 출석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. (제25조의2, [별표II] 참조) <개정 2022.8.11.>

- ② <삭제 2022.8.11.>

제25조의 2(출석인정) ① 출석인정이란, [별표II]에 명시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.

- ② [별표II]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혹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(생리결석은 제외)를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담당 교원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보고서, 대체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2.8.11.]

제25조의 3(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)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.

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강의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.

[본조신설 2024.02.27.]

제26조(결석과 수험자격) ①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 해당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한다. <개정 2017.8.3., 2022.8.11.>

② <삭제 2022.0.11.>

③ 학기중 취업 학생은 당해 학기 졸업이 가능한 경우 학칙 제38조에 의거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더라도 소정의 증빙서류(재직증명서 등)를 제출하고 담당교수가 요구하는 과제를 제출하면 수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7.8.3., 2022.8.11.>

제27조(일반휴학) ① 질병, 가정사정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를 제출, 신학부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8.11.>

② 휴학원서는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으로 작성하고,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학생증과 함께 교학과에 제출한다.

③ 휴학 사유가 질병일 경우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8.11.>

④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. 단, 징집 및 질병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28조(휴학원서 제출기간) ① 휴학원서는 1학기 휴학인 경우 1월 10일, 2학기 휴학인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4주(28일) 이내까지 허가한다.

②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휴학원 제출은 개강 후 4주 이내로 하며, 초과시 학칙 제26조에 의해 제적처리한다. <개정 2022.03.01.>

제29조(휴학기간 및 횟수) ① 휴학기간은 1회에 1년(2학기)으로 하며, 휴학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재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9.4.16.>

② 재학기간 중 휴학기간은 통산 3년(6학기)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(4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9.4.16.>

③ 군입대휴학, 수련휴학(Practicum),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<개정 2019.4.16.>

제30조(군입대휴학) ① 휴학 또는 재학 중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, 학생증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② 당해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3이 경과한 후 군입대(지원입대 포함)휴학을 하는 경우 사전에 학기 말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다.

제31조(복학)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복학원서는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으로 작성하고,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교학과에 제출한다.

③ 복학원서는 1학기 복학인 경우 1월 10일, 2학기 복학인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3주(21일) 이내까지 허가한다. <개정 2022.8.11.>

④ 질병으로 휴학한 자 중 정신질환으로 휴학하여 복학하는 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8.11.>

제32조(복학학년 및 학기)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휴학 당시의 학년 및 학기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3조(제적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한다.<개정 2020.3.1.>

- 1. 학칙 제5조의 재학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
- 2. 학칙 제26조의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○ 제34조(자퇴)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으로 작성하고,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학생증과 함께 교학과에 제출한다.

제6장 졸업논문

제35조(논문제출자격) <삭제 2022.03.01.> ① 졸업논문제출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 한다. <신설 2022.03.01.>

② 복수전공자 및 신학제2전공자의 졸업논문은 20쪽 이상의 소논문으로 한다. <신설 2022.03.01.>

제36조(지도교수) ① 학생은 논문제목이 명기된 지도교수확인서를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교학과에 제출한다. <개정 2012.3.1>

- ② 지도교수 변경시에는 논문지도변경승인서를 교학과에 제출한다.
- ③ 본 교정에서 강의하는 모든 교수(시간강사포함)는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
- ④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한다.

○ 제37조(제출기한) 논문제출마감은 전기졸업예정자는 11월 10일, 후기졸업예정자는 5월 10일이며, 지정된 규격 및 양식에 따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1.13., 2022.8.11.>

- 제38조(논문평가) ① 논문평가등급은 A+, A, B+, B, C+, C, D+, D, F로 하며 D급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.
 <개정 2020.11.13.>
 - ②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표(성적)를 학기말 성적 제출 마감일까지 교학과에 제출한다.
 -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으며, 졸업논문이 합격된 학기에 학위증서를 수여받는다.

제39조(졸업논문 합격자격연장)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이 어떤 사유로 해당학기에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합격 자격을 1년간 연장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군복무의 경우에는 제대후 1년까지로 한다.

제7장 납입금

- 제40조(납입금 납입의무)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수업료, 기성회비,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.

- 제41조(납입금 분납) ① 납입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 다만 신입학과 편입학 첫 학기에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.
 - ② 분할납부 횟수는 학기별 4회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25>

- 제42조(납입금 감면 및 반환) ① 입학금, 수업료, 기타 납입금은 결석, 정학, 유급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.
 - ② 휴학 또는 자퇴(입학포기)한 자의 납입금은 본교 「수업료 및 납입금 반환 규정」에 따라 반환한다. <개정 2008.3.1., 2019.4.16.>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① 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- ② 본 변경 시행세칙(제7조,제19조)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- ③ 본 변경 시행세칙(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22조)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2조는 2004학년도 제2학기말 성적사정 때부터 적용한다.
 - ④ 본 변경 시행세칙(제6조, 제42조)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관련 제규정은 폐지한다.
 - ② 이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입학자 중 사안에 따라 입학당시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. 단, 입학당시 시행세칙의 적용여부는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칙

○ 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14조, 제15조)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본 개정 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은 전공 평균성적 및 교직과목별 성적 각각 80점 이상으로 한다.

제3조(교육실습에 대한 경과조치) 본 개정 시행세칙 제1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육실습은 4주간의 교육실습(2학점)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○ 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7조, 제15조)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12조, 제13조)은 201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41조)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4조, 제7조, 제7의 1조, 제15조)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○ 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26조)은 201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2조)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29조, 제42조)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16조, 제21조, 제22조, 제33조)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26조, <별표II>)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되,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5조의2, 제6조, 제24조, 제37조, 제38조)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(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14조, 제18조, 제24조, 제28조, 제35조)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(제7조, 제25조, 제25조의2, 제26조, 제27조, 제31조, 제37조, [별표2])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(제11조, 제12조, 제25조의 3)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성적평가 등급표

등급	평점	실점
A+	4.5	95 - 100
A	4.0	90 - 94
B+	3.5	85 - 89
B	3.0	80 - 84
C+	2.5	75 - 79
C	2.0	70 - 74
D+	1.5	65 - 69
D	1.0	60 - 64
F	0.0	0 - 59

[별표 2] 출석인정 사유 <개정 2020.04.03., 2022.8.11.>

출석인정 사유	인정기간
(가)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	3일
(나) 3일 이상 입원치료 기간	3주이내
(다) 징병검사, 예비군, 병무에 관한 사항	통지서에 명기된 일수
(라)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	해당기간
<삭제>	<삭제>
(마) 정부기간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	해당기간
<삭제>	<삭제>
<삭제>	<삭제>
(바) 생리결석	학기별 4회 제한 시험기간에는 불인정
(사)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(격리)가 필요한 경우	진단서에 표기된 기간
(아) 기타 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허가기간



[별표 3] 납입금 반환 기준 <삭제 2019.4.16.>

